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년월일 : 1999. 8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자치역량 강화와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연도별 정원 조정 내용

구 분	개편전 정 원	99		2000		2001	
계	2,455	2,409	△46	2,359	△50	2,280	△79
• 집행기관의 정원	1,537	1,492	△45	1,443	△49	1,367	△76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	820	-	820	-	820	-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	41	-	41	-	41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7	56	△1	55	△1	52	△3

- 충북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3년) 연장
- 연차별 정원 적용 규정 및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보장 명시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28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7 명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820 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 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 명

조례 제240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항중 “정원 23명은 1999년 12월 31일”을 “정원 19명은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2,409
1. 집행기관의 정원	1,492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6

[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2,359
1. 집행기관의 정원	1,443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5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인(집행기관의 정원 45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인(집행기관의 정원 49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9인(집행기관의 정원 76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280명으로 하며</u>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정원제외) : <u>1,537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67 명</u>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820명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 명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57 명</u>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52 명</u>
총 계 : 2,455명	
제3조(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부 칙('98. 9. 11 제2408호)	부 칙('98. 9. 11 제2408호)
① - ② (생략)	①- ②(현행과 같음)
③(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정원 23명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한시정원) _____ _____ 정원 19명은 2002년 12 월 31일 _____

근거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 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④ (생략)